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한국밸류 10 년투자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 설명서의 내용중 중요 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밸류 10 년투자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주식)**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국밸류 10 년투자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주식) (AP622)**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02-3276-6000)
4.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www.koreavalueasset.com) 및 금융투자협회(kofia.or.kr) 홈페이지를 참고
5. 작 성 기 준 일 : 2014년 2월 20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2월 6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koreavalueasset.com, 02-3276-6000)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지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2 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후 5 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누계액에 일정비율(100 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지속**으로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저평가 되어 있는 가치주에 집중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200] x 0.9) + ([CD 금리] x 0.1)**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주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권 거래시장의 흐름을 90% 반영하고 채권을 포함한 기타 유동성 자산의 흐름을 10% 반영한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주로 저평가된 주식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주식 등 지분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장기 복리수익을 추구하는 "가치투자 펀드"를 운용방침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주식부문	기업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성장기치 대비 적정가격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여 적정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채권 및 유동성자산 부문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로 주권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채무증권,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운용합니다

(2) 위험관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단계별로 운용인력, 준법감시인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험관리를 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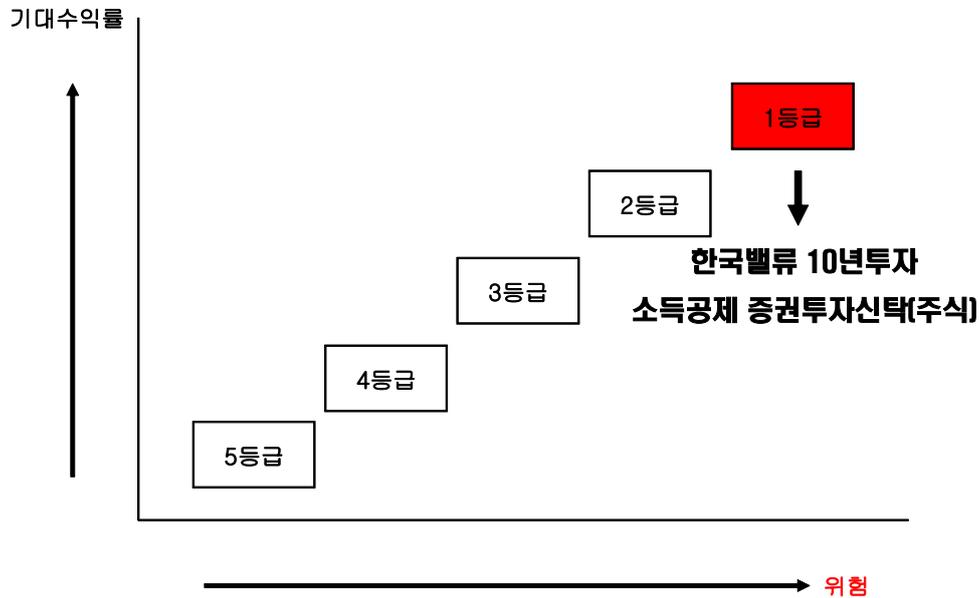
일반위험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종목의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권, 채무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권,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스왑)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채권등에 비해 가격변동 위험이 큰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5 등급중 1 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대등한 수준으로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투자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를 통한 실세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주식시장 변동에 따른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5. 운용전문인력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4.02.20)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김동영	1973	자산 운용 2 본부장	12	36,601 억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 한국투자증권(2001~2006)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자산운용 2 본부 (2006~현재)
김은형	1981	차장	12	36,601 억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투자증권(2004~2006)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자산운용 2 본부 (2006~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자산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4.02.20)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이채원	1964	부사장 (CIO)	14	36,894 억	-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동원투신운용(1996 ~ 2000) - 한국투자증권(2000 ~ 2006)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6 ~ 현재)

- 주1)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신규 설정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C	없음	-	-	-	-
C-E	온라인 가입자	-	-	-	-
S-T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	-	-	-
부과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종류)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증권거래 비용
C	0.5	0.7	0.03	0.018	0.0024	1.2504	0.2590
C-E	0.5	0.35	0.03	0.018	0.0024	0.9004	0.2590
S-T	0.5	0.35	0.03	0.018	0.0024	0.9004	0.2590
지급시기	최초보수계산일로부터 매 3 개월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이 투자신탁과 같은 주식형 투자신탁인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이 투자신탁과 같은 주식형 투자신탁인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종류	1년	3년	5년	10년
C	125	389	674	1,484
C-E	90	281	489	1,086
S-T	90	281	489	1,086

주)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2
가입자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매년 6.30.이전에 가입 시에는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입 가능함
가입기간	2015.12.31.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저축계약기간	최소 10 년 이상 * 단 5 년 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가입한도	연 600 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 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u>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u>). 다만, 10 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감면세액추징	가입 후 5 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 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2. 해지 전 6 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 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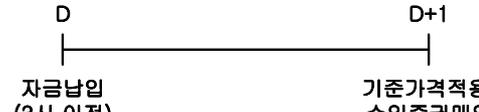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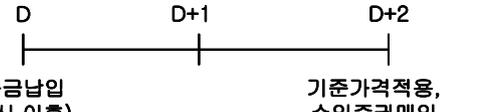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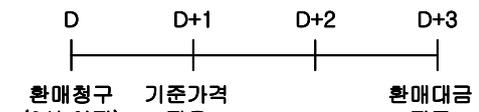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1)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주요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 집합투자업자 본점 및 판매회사 본·지점에 공고·게시, - 집합투자업자(www.koreavalueasset.com)·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2) 매입 및 환매 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오후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후
매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적용 

(3)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III 요약 재무정보

1. 요약재무정보 : 신규 설정 집합투자기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